328. 사망신고

□ 민원개요

○ 사망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읍(면)·동 또는 주소지, 거주지 읍(면)에 신고하는 민원사무

□ 민원 처리현황

담당부서	읍.면사무소	처리기간	10일	수수료
근거법령	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			없음

□ 민원인 제출서류

○ 신고서 1부.
○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1부
○ 사망 증명서 1부(진단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 동·리·통장 또는 인우인 2명이 작성한 사망 증명서)
○ 관공서의 사망 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
○ 사망신고 수리 증명서(외국관공서에 사망 신고한 경우)

□ 유의 사항

○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
(신고 기간이 경과되면 50,000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)

□ 문의처

부서명	전화번호	비고
읍.면사무소 주민복지 (민원)담당	향천읍930-5351 봉산면930-5391 효산면930-5431 가야면930-5471 아로면930-5511 율곡면930-5551 초계면930-5591 쌍백면930-5631 덕곡면930-5671 청덕면930-5711 적중면930-5751 대양면930-5791 쌍백면930-5831 삼가면930-5871 가회면930-5911 대병면930-5951 율주면930-5991	